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관계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참고서

○○직물 근로자가 사내체육대회에 대비하여 점심시간에 야구연습 중 부상하여 “좌·우비골 전위골절”의 상병이 발생한 경우

(87-331 호 87.12.21. 취소)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전북 이리시 이양동

성명: 이 ○ ○

소속: ○ ○ 직물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상 동

성명: //

소속: //

원 처 분 청: 노동부 이리지방사무소장

주 문

노동부 이리사무소장이 87.10.23.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노동부 이리지방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7.10.23.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청구인은 ○○직물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중 87.10.2. 점심시간(13:00-14:00) 중에 사내체육대회(87.10.25. 예정)에 대비 야구 선수의 일원으로서 사내 운동장에서 주간반과 야간반 야구선수들이 야구 경기연습중 피재자는 다른 선수와 충돌하여 “좌, 우 비골 전위골절”에 의거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87.10.25. 실시 예정인 체육 대회가 연기되었고, 다른 경기종목은 연습한 사실이 없고, 야구 용구를 사용하도록 내준 총무과장대리 “양○○”은 상사의 지시없이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임의로한 행위라 하여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재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고 사내 체육대회는 전체 근로자가 참여하는 회사 행사로서 사업주 승인이 있었으며, 이 체육대회가 연기된 것은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다른 운동경기(배구, 릴레이, 터치볼, 기타 오락게임)의 연습을 안한것은 회사 시설물 사정 및 참여 근로자의 필요성 여부에 따른 것이며, 야구용구를 내준 “양○○”은 체육대회 총괄운영 집행자로서 야구연습에 대한 상사의 별도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날 야구연습을 위한 야구용구도 노조지부장이 “양○○”에게 야구연습을 할러니까 용구를 달라고 말한 점 등, 근로자의 체육행사를 위한 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부상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87.11.30. 이 ○ ○)
2. 원처분청 의견서(87.12.7. 노동부 이리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87.11.19. 오 ○ ○)
4. 요양 신청서(87.10.5. 이 ○ ○)
5. 진단서(87.10.5. 김○○외과원장)
6. 요양 결의서(87.10.20. 노동부 이리사무소장)
7.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 쟁점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87.10.25. 개최될 사내 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있는 야구선수로 선발되어 87.10.2.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주간반과 교대반이 야구연습을 하고 있던중, 피재자는 2루 수비를 하다가 1루 주자인 동료근로자 김○○과 충돌하여 “좌, 우 비골 전위골절”의 부상을 입고 전북 이리시 소재 김○○외과의원에서 입원 가료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위에서 언급한 야구경기연습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주장이 다르므로 이에 관하여 87.11.2. 원처분청에 참고인으로서 출두한 ○○직물주식회사 총무과장 대리 “양○○”의 진술서에 의하면 사내체육대회는 매년 가을에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왔고, 부득이한 경우는 야유회로 대체된다고 하였으며 피재 당일인 87.10.2. 점심시간(13:00-14:00)에 주간반과 교대반이 야구연습을 하기 위하여 동 회사 노동조합지부장인 “박○○”이 “양○○” 대리에게 가서 야구용구를 달라고 하여 그를 내주었다는 진술을 한점으로 보아 사내 체육대회는 회사 소속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사업주의 승인하에 계획된 회사의 행사로서 이에 대비한 점심시간중 야구경기의 연습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자의에 의하여 타근로자를 모아놓고 행한 사적행위인 야구운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주간반과 교대반이 상대하여 연습을 행한 것으로 보아 사내 체육대회에 대비한 회사의 공적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노동부 예규 제 92 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 6 조 제 3 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

한 재해로 판정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법

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건설 용접공이 ○○공업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공업 직원의 부탁으로 빈 드럼통을 절단하려고 용접봉을 대는 순간 폭발하여 좌측 수지에 부상을 입은 경우

(86-59 호 86.4.21. 취소)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성명 : 김 ○ ○

소속 : ○ ○ 건설(주)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소속 : //

원 처 분 청 : 노동부 포항지방사무소장

주 문

노동부 포항지방사무소장이 86.1.16.자 “김○○”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노동부 포항지방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86.1.16.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 소속 용접공으로서 동사가 시공하는 ○○공업(주) 건설현장에서 근

무하여 오던중 85.12.12.14:00경 ○○공업(주) 직원 “김○○”가 빈 드럼통을 절단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드럼통을 절단하려고 용접봉을 대는 순간 폭발하여 좌측수지에 부상을 입고 원처분청에 보험법 제9조의3에 의한 요양신청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속된 회사 직원이 아닌 ○○공업(주) 직원의 부탁으로 용접봉을 사용한 것은 소속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고 사업주의 지지도 없었으므로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재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

공업(주)가 청구인 소속 회사는 아니지만 ○○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회사이고 현장감독도 요청이 있으면 유대관계를 갖고 협조하도록 말했으며, 재해장소가 통상 작업장이고 사용한 용접기도 동일하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이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86.3.17. 김 ○ ○)
2. 원처분청 의견서(86.3. 노동부 포항지방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86.2.11. 송 ○ ○)
4. 요양신청서(86.1.8. 김 ○ ○)
5. 진 단 서(86.3.12. 박○○외과의원장)
6. 피해자 김○○에 대한 의견서(86.3.6. ○공업주식회사 포항공장장 정○○)
7. 진정서 종결회신 및 요양불승인 통보(86.1.16. 노동부 포항지방사무소장)
8. 문 답 서(86.1.8. 김 ○ ○)
9.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을 심리하는데, 청구인은 ○○건설(주) ○○건설현장 소속 용접기능공으로서 동사가 시공하는 ○○공업(주) ○○공장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오던중 85.12.12.14:00 경 청구인이 맨홀뚜껑을 만들기 위하여 철물을 절단 용접하던중 같은 구내에 있는 ○

○공업(주) 소속 직원 “김○○”가 다가와서 ○○공업(주)에는 용접절단자가 없으니 빈 드럼통을 절단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므로 그 드럼통을 절단하다가 폭발하여 부상을 당하였는 바, 이 같은 청구인의 부상이 보험법 제3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시 청구인은 사업장내에서 맨홀뚜껑을 만들기 위하여 철물을 절단 용접하는 중이었으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며 청구인에게 절단 용접을 의뢰한 드럼통의 사용목적이 ○○공업(주) 소속 “김○○”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업(주)의 청소용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절단 요청한 것이므로 ○○공업(주)가 시공체인 ○○건설(주)에게 작업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소속한 ○○건설(주)는 드럼통 작업을 의뢰한 ○○공업(주)의 시공업체로서 업무수행상 상호 협조하여야 할 특별한 관계에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청구인은 ○○공업(주) 공장건설에 따른 시공업체인 ○○건설(주) 직원으로서 당사에서 특별한 작업의뢰 및 지시가 없더라도 시공업체로서 공사준공완료시까지 경미한 작업을 지원하는 것은 공사 시공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수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업(주)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빈 드럼통을 절단 용접하는 것은 사적행위와는 구별하여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상을 업무의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